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1가합5161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, 박정혁, 문옥

피고 주식회사 A

특별대리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

변론 종결 2024. 3. 28.

판결 선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93,754,671원 및 그 중 486,416,766원에 대하여 2021. 2. 15.부터 2021. 4. 2.까지는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

- 1) 원고는 2016. 6. 14.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48,000,000원, 신용보증기간 2017. 6. 13.까지,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(이하 '이 사건 보증약정'이라 한다), 이후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다가 2020. 3. 25. 신용보증원금 476,000,000원, 보증기한 2021. 3. 26.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.
- 2)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,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,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·이전·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.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2019. 4. 1.부터 현재까지 연 8%이다.
- 3) 피고는 위 2016. 6. 14.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,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3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.

나.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

- 1)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20. 9. 28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았고, 이에 원고는 2021. 2. 15.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486,416,766원(= 잔여 원금 476,000,000원 + 이자 10,416,776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- 2)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·집행하기 위한 대지급금 8,914,090원을 지출하였는데, 2022. 9. 6. 피고로부터 1,576,185원을 회수하여 위 대지급금의 변제에 일부 충당함에 따라 대지급금은 7,337,905원이 남게 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493,754,671원(= 대위변제금 486,416,766원 + 대지급금 7,337,905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86,416,7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. 2. 1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. 4. 2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상원

판사이나경

판사정재우

1) 원고는 소 제기 당시 C, D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구하였으나,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채무자인 망 E의 상속인 B이 수원회생법원 2022하단567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2022. 12. 12.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, 망 E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F이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 및 부인의 소로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망 E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F과 C, D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변론이 분리되어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다.